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장제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177 발의연월일: 2020. 6. 30.

발 의 자:장제원·김기현·김석기

홍문표 · 송언석 · 박덕흠

권성동 • 이채익 • 정운천

구자근・홍준표・김형동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시장·군수·구청장으로 하여금 등록된 공장이 멸실되거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, 공장이 폐업되거나 제조시설이 멸실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장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산업화가 진행될 당시 지어진 공장 주변으로 주거지가 확장되면서 소음·분진·오페수 악취 등 지역 주민의 관련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공장등록의 취소사유에 이와 관련된 사유를 추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공장 등록의 취소 사유에 공장이 주거 밀집지역 인근에 위치하여 주민에게 신체적·정신적 피해를 유발하는 등 인근지역 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추가하고, 동 사

유에 해당되어 공장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 공장의 철수·이전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토지·금융·세제 등의 지원을 하 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7조제1항제2호의2 및 같은 조 제4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의2. 공장이 주거 밀집지역 인근에 위치하여 주민에게 신체적·정신 적 피해를 유발하는 등 인근지역 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되거 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2호의2에 해당하여 공장등록을 취소하는 경우 해당 공장의 철수·이전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·금융·세제 또는 그 밖의 행정절차상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7조(공장의 등록취소 등) ①	제17조(공장의 등록취소 등) ① -
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6	
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	
에 따라 등록된 공장이 다음	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	
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	
바에 따라 해당 공장의 등록을	
취소할 수 있다.	
1.・2. (생략)	1.・2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2의2. 공장이 주거 밀집지역 인
	근에 위치하여 주민에게 신체
	적·정신적 피해를 유발하는
	등 인근지역 주민의 건강에
	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
	려가 있는 경우
3. (생 략)	3. (현행과 같음)
②・③ (생 략)	②・③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
	항제2호의2에 해당하여 공장등
	록을 취소하는 경우 해당 공장
	의 철수·이전이 원활히 이루어
	지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
	바에 따라 토지·금융·세제 또는

<u>그 밖의 행정절차상의 지원을</u> <u>하여야 한다.</u>